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6노818	의료법위반
피 고 인	A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조석규(기소), 반종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필관	
	법무법인 화우 담당 변호사 김남근, 최유나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6. 선고 2014고정4193 판결
판 결 선 고	2016. 12. 6.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환자의 허벅지에 기복기라는 장비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를 체내에 주입하는 행위는 한의사로서 환자에게 발생한 비만의 원인을 확인하고 그에



맞도록 한의학적 원리에 따라 기침(氣鍼)을 시술한 것으로서 한의사의 면허 범위에 포함된 진료행위에 해당하므로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한의사에게 허가된 의료행위의 범위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피고인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도과하여 제출한 항소이유보충서는 위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3. 5. 13.경 C한의원에서 환자 D의 허벅지에 축적된 부분적인 지방을 분해하기 위해 '기복기'라는 장비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를 체내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일명 '카복시' 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고 한다)을 하여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경부터 2014. 7.경까지 C한의원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을 상대로 카복시 시술을 하여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판결의 이유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법리를 실시한 다음 ①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 범위는 의학과 한의학으로 이원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인체와 질병을 보는 관점도 달라서 그 진단방법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 점, ② 이 사건 시술은 이산화탄소의 물리적 특성 및 이산화탄소에 반응하는 인체 조직의 생화학적 특성에 근거를 둔 것이므로,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를 기초로 하였거나 이를 응용한 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시술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침습적인 의료행위로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상의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점, ④ 한의약육성법의 규정이 전통적인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에 기초로 하지 않은 의료기기 등의 사용까지도 허용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기 어려운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시술이 한의사의 면허된 범위 내의 의료행위라는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판결이유에서 적절히 실시한 법리에 따라, 원심이 인정한 그와 같은 사정과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적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한 공소사실과 같은 이 사건 시술은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 이 사건 시술의 연원과 작용기전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치료법은 1932년 프랑스에서 시작되었는데 이후 직접 피하에 주입된 이산화탄소에 의한 혈관확장과 말초혈액순환 개선효과가 알려지면서 이탈리아에서 이용되었다가 2001년경 부분비만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임상연구가 발표되면서 이산화탄소를 피하지방층에 주입하여 부분비만의 치료 목적으로 응용되기 시작하였고, 지방의 감소 효과는 이산화탄소의 주입으로 인한 피부의 혈류량 증가 및 그로 인한 지



지방분해의 촉진이라는 생리학적 과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한편, 기복기는 원래 복강 내 검사나 시야 확보를 위해 복막을 확장하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된 것이었으나, 위와 같이 비만치료 효과가 밝혀지자 피하층에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는 이 사건 시술에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의사들에 의하여 이 사건 시술이 서양의학 원리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시술의 연원과 작용기전은 한의학계에서 발표된 논문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역시 이와 같은 원리에 의하여 지방분해 효과가 발생한다고 인정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제150면), 이 사건 시술은 서양의학에서 시작되고 서양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로 하여 발전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된다.

(2) 한의학 원리에 기초한 것인지 여부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시술을 한의학에서 경피기주요법(經皮氣注療法) 또는 기침(氣鍼)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기(氣)의 개념에는 대기의 구성성분이며 조직의 에너지 대사산물인 이산화탄소가 포함되고, 기가 가는 곳에 혈이 따라가므로 이산화탄소를 주입하여 혈류순환을 증가시켜 지방분해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한의학적 생리기전에 따른 것이며, 환자의 변증유형별로 기혈의 순환에 가장 효과적인 혈자리에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시술됨으로써 비만부위에 시술하는 서양의학에 따른 치료법과 차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시술의 연원이나 기전이 서양의학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고 이미 이 사건 시술이 의사들에 의하여 서양의학의 원리에 따라 광범위하게 시술되고 있으며 피고인의 시술방법도 이와 다르지 아니한 점(피고인은 검찰 수



사과정에서 의사에 의한 시술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확인한 후 그것이 피고인의 시술 방법과 일치한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152면), 한의학에서 생명과 신체의 근원적 에너지로 이해되는 기(氣)의 개념에 공기를 이루는 물질인 이산화탄소가 포함된다거나, 공기 중 0.03%에 불과한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는 것을 두고 '기의 주입'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쉽게 수긍되지 아니하는 점, 한의학 분야에서 이산화탄소의 주입을 통한 치료는 주로 이 사건 시술과 같은 비만 치료 목적으로 사용될 뿐, 기가 부족함으로 인하여 생긴다는 다른 병증의 치료에 적용되지는 아니하는 점, 이산화탄소가 주입되는 혈자리가 환자들이 주로 비만을 호소하는 부위에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역시 지방분해를 원하는 부위에 시술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51면)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주장은 서양의학에 기초한 치료법을 한의학적 원리에 따라 포장하려는 시도에 불과하고, 달리 이 사건 시술이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

(3)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가능성 및 그 허용의 필요성 여부

이 사건 시술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은 단순한 통증이나 가려움 등 비교적 가벼운 것부터 마이코박테리움 등에 의한 세균감염, 피하공기종, 기흉, 종격동기종 등이 있고, 혈관을 찔렀을 경우에는 혈전 색전증이나 공기 색전증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이와 같은 합병증은 많은 경우 주사바늘을 몸에 찌른 후 체내에 이산화탄소를 주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어서 단순히 통상적인 침술에 따른 합병증 위험의 정도와 같다고 볼 수 없다.

그 중 기흉이나 종격동기종을 감별하기 위해서는 흉부방사선 촬영이 필요할 수도 있고, 세균감염 증상이 보이는 경우 세균배양검사를 통한 적절한 항생제 처방이 필요한



데, 이와 같은 부작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서양의학에 기초한 원리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바, 한의사가 이를 적절히 대처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시술이 비교적 간단하여 부작용 발생의 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시술을 한의사에게 허용하는 경우 위와 같은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커짐을 부인할 수 없다.

나아가 한의학에서는 이 사건 시술 이외에도 그 면허 범위 내에 한약의 처방이나 통상적인 침술 등을 통한 다양한 종류의 비만치료법이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보건위생상의 위해 가능성을 무시하고 기복기를 사용하는 이 사건 시술을 허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박인식 _____

 판사 김경훈 _____

 판사 박광서 _____